

사. 보상 기준(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)

구분	지급 기준			
진료비	- 환자 본인부담금: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			
간병비	- 예방접종피해와 관련하여 입원 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(정액) - 응급실, 격리실, 간호간병통합병동 등 입원 시 정액간병비 미지급			
장애인 일시보상금	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경증)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은 100분의 100 지급 - 「국민연금법」,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및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,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10 지급 ※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, 더 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하지 않음			
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	- 사망일시보상금: 사망 당시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			
	적 용 기 간	사망일시보상금(원)	월최저임금액(원)	시간급 최저임금(원)
	2021.1.1.~2021.12.31.	437,395,200	1,822,480	8,720
	2022.1.1.~2022.12.31.	459,465,600	1,914,440	9,160
	2023.1.1.~2023.12.31.	482,539,200	2,010,580	9,620
	2024.1.1.~2024.12.31.	494,577,600	2,060,740	9,860
	2025.1.1.~2025.12.31.	503,104,800	2,096,270	10,030
	2026.1.1.~2026.12.31.	517,651,200	2,156,880	10,320
※ 월최저임금액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(자료: 고용노동부 고시)				
- 장제비: 30만원				
제외사항	- 의료보호기금이나 기타 복지사업(긴급복지지원,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), 법정 감면대상자(보훈유공자, 산재보험 등), 병원자체 감면제도(직원할인, 제휴 등), 교육부 건강회복 지원사업 등으로 지급 또는 감면받은 금액 - 재심의의 경우 기존 심의결과 보상 또는 지원 결정으로 기지급된 의료비 - 비급여 항목 중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과다한 검사비 및 치료비 - 제증명료, 비급여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(알부민 등) 투여 비용 등 * 포도당,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-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일시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시점 이후의 진료비			

※ 추가보상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가 지급 여부 결정됨

※ 보상 및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가사업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,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및 지원이 불가함(특별법 제16조)